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서왕진·김정호·이해민

조 국・정춘생・김재원

차규근 • 신장식 • 김준형

박은정 · 강경숙 · 김선민

한창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·운영되고 있음.

특히, 기후 문제는 환경·산업·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·운영되어 왔음.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,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,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

중·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5조의2 신설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.
  -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,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  - 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
  - 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
 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  - 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

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 다.

- 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①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⑧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2(기후위기특별위원회)
	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
	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.
	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
	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<u>」</u> ,
	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
	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신에
	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
	용・보급 촉진법」 및 탄소중
	립과 온실가스 감축, 재생에
	너지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
	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	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
	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<u>」</u>
	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
	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
	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
	결산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
	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
	 한 예비심사
	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
	런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

 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

 심사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 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
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명으로 한다. 이 경우위원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
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 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 거한다.

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

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①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 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8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